

<p>불어 있는 地域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國家 主要 施設 및 보안 목표가 없는 다세대 密集住宅地域</li> <li>• 경수국도 양쪽은 완전 상업지역화되어 있음.</li> <li>• 산업용재 流通商街와 철재상가가 위치하 고 있음.</li> <li>• 또한 1990年 11月 일부지역이 風致地 區 해제로 타 地域 住民과의 위화감 造成등</li> </ul> <p>동 地域의 風致地區 解除 民願은 그 타</p>	<p>당성이 있음.</p> <p>4.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專門委員 宋在璣)</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風致地區 解除 요구한 始興3洞 지역은 京畿道와 인접지로서 京畿道 風致地區 전 폐율은 40%로서 시흥지구와는 차이가 있음.</li> <li>○請願人은 風致地區 解除를 요구하고 있으 나 새로 제정될 區의 建築 條例로서 40%로 緩和하여 주는 것이 좋은지 현 지 확인후 處理 意見임.</li> </ul>								
5. 質疑 및 答辯 要旨(答辯者: 都市計劃局長 具停會)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질 의 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답 변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td> <td style="padding: 2px;">○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 완화가 가능할 것임.</td> </tr> <tr> <td style="padding: 2px;">○현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td> <td style="padding: 2px;">○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td> </tr> <tr> <td style="padding: 2px;">○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 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td> <td style="padding: 2px;">○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td> </tr> </tbody> </table>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	○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 완화가 가능할 것임.	○현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	○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 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	○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京畿道와 인접지 風致地區를 京畿道와 동일하게 緩和할 用意는 없나?	○改正된 建築法에 따라 區 建築條例로서 40% 완화가 가능할 것임.								
○현지는 商街地域化되어 風致地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데	○風致地區 지정 目的에 맞추어 가능한 保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내 風致 전체를 再檢討하여 解除 가 능한 곳은 시 자체로 解除할 方法은 없는가?	○1989年度에 일제히 정비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再整備는 시기상조라고 思料 됨.								
<p>6. 討論 要旨 없음.</p>	<p>능한 상태이므로 地域現況에 맞게 風致地區 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아직도 대지로 남아 있는 관악산 자연공원 인접 공대지는 解除地域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思料됨.</p>								
<p>7. 小委員會 審查內容 현지를 확인한 바, 인접지에 기계공구상 가가 있어 請願要求地域까지 상가지역화되어 있어 風致地區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p>	<p>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서</p>								
<p>冠岳山 및 공대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風 致地區를 解除할 수 있도록 청원 수용 건의</p>	<p>1993.2. 도시정비위원회</p>								
<p>8. 審查結果 小委員會에서 審查한 내용대로 관악산자락 공대지 地域을 제외한 나머지 풍치지역은 이를 해제하여 주기로 決議</p>	<p>1. 심사경과 ○청 원 인: 전정식, 서대문구 창천동 100- 99</p>								
<p>9.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p>	<p>○소개의원: 박상동의원 ○접수일자: 1992.10.21(접수번호 60)</p>								
<p>10. 기타 必要事項 없음.</p>	<p>○회부일자: 1992.10.22</p>								
<p>11. 意見書 請願要求한 始興3洞 風致地區는 준상가지 역화되어 사실상 風致地區로서 保存은 불가</p>									

○상정일자 : 제60회 정기회 제2차 도시정비 위원회(1993.2.24)상정, 의결

## 2. 청원요지

청원요구지역은 1977년 12월 3일 풍치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시계획현황 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되고 있으며

- 이미 풍치지구 지정사유가 해소(일반 주거지역으로 주택가 형성)되었으므로
-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내용임.

## 3. 취지설명(박상동의원)

본청원은 청원인의 70여 가구의 거주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첫째, 동지역은 1977년 12월 3일 건설부 고시 235호로 “풍치지구”로 지정된 후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조치없이 계속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법적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는 풍치지구 지정사유는 현재 주택가(일반주거지역)로 형성된 주변여건과 환경의 많은 변화로 이미 상실되었으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능의 증진목적의 타당성도 찾기 어려움.

셋째, 이에 따라 현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동법 제10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동지역의 “풍치지구”로의 존치 가치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풍치지구를 해제하여 주기 바라며 본청원을 소개하는 것임.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전문위원 송재경)

○청원인이 풍치지구를 해제요구한 서대문구 창천동 100일대 85필지 약 13,000평은 1977.12.3 풍치지구로 결정된 후

○1989.11.2 주변일부 저소득시민 밀집지역

은 풍치지구에서 해제하고 이 지역은 현재까지 풍치지구로 유지되고 있음.

○이 지역은 주변에 대학촌이 있고 간선도로인 성산대로와 경의선철도의 가시권에 위치하고 전면에는 신촌 상가지역과 연접된 지역특성이 있음.

○또 이지역은 택지규모가 비교적 큰관계로 어느정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재산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있는 것이 인정되나

○지난 92.6.1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풍치지구에 대한 건폐율이 완화될 전망으로 있어, 건물의 중·개축은 물론 재산권행사에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인정되어 이 지역 풍치지구 해제는 신중한 검토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 페이지에 계속)

5. 질의 및 답변요지(답변자 도시계획국장 구돈회)	
질 문 요 지	답 변 요 지
○ 창천동 지역은 89년에 풍치지구를 일부 해제한 것으로 아는데 왜 청원 지역은 제외되었는가?	○ '89년도 해제지역은 대지 규모가 적고 저지대 저소득 주민거주지에 한해서 해제하였음.
○ 현 풍치지역을 해제할 시 시청의 의견은?	○ 창천동 지역은 대지규모가 비교적 크고 또 지역에 대학촌이 있으며 성산로 등 대로에서 가시권지역으로 해제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 창천동은 대부분 상가지역화되어 풍치지구 보존이 어렵다고 보는데 상가지역이라도 풍치지구로 유지할 것인가?	○ 풍치지구가 상가지역화 되는 것은 지구 보전상 문제점이 있음.
6. 토론요지 없음.	.....
7. 소위원회 심사내용 청원요구지역을 현장확인 해보니 풍치지역은 지역중간에 둘려 대로변 가시권이나 대학촌 인구지역과 무관하며 지역일부는 상가지역화되어 풍치지구보존은 불가능 상태이므로 주민요구대로 풍치지구를 해제할 것을 건의함.	흑석1동 170번지 일원 풍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 1993. 2. 도시정비위원회
8. 심사결과 소위원회 심사안대로 현지가 풍치지구로서 보존이 불가능하다면 지역현황에 맞게 풍치지구를 해제하기로 결정.	1. 심사경과 ○ 청원자 : 동작구 흑석동 186-10 임인도 ○ 소개의원 : 김우중 의원 ○ 접수일자 : 1992.11. 5(접수번호 : 61번) ○ 회부일자 : 1992.11.9 ○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 위원회(1993.2.24) 상정, 의결
9. 소수의견 없음.	2. 청원요지 ○ 동작구 흑석1동 170번지 일원 363필지 119,484㎡(약 36,207평)인 이 지역은 풍치지구로 지정할 당시인 52년 전에도 지정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예산조차 필요없음.	○ '87년도 전체 풍치지구 면적의 1/2을 해제하였을 당시 풍치지구 지정 목적상 우선하여 해제할 곳은 그대로 두고 풍치지구를 보존해야 할 곳은 해제하였기 근거지와 형평을 결하였고
11. 의견서 청원인이 요구한 창천동 100번지 일원 풍치지구는 89년도 인접지는 해제하고 남은 잔여지로서 지역 현황으로 보아 풍치지구 보전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상가기능까지 침투된 상태이므로 용도지구의 합리적인 지정을 위해 이 청원요구지역은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